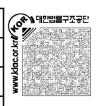
즉시접수	당일접수
제출자	
총	건



#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

<b>7</b> ]	人		년	월	일	-1	ام اد		등기관 확인			각종 통지		
접	수	제		,	ই	제	리인	<u>!</u>						
							부	동산의	표시					
추기	<b>가</b> 할	부동	산											
전ㅇ	세 등	-기한	부동	산 포	<b>포시</b>									
		인과 그		일일			년	. 월	일					
등	7]	의 달												
	권		그 액			금			윈					
채		무	자											
전	에등	-기한	근저	당권										
구분		성 (상호	명 T. 명칭		- 1			는번호 록번호)		주	소 (소	재 지)		
등기의무자														
등기권리자														



등 록 면 허	세	금				원
지 방 교 육	세	급				원
세 액 합	계	급				원
		금				원
등 기 신 청 수 수	료	납부번호	፮ :			
		일괄납부	₽:	건		원
	등	기의무자의	의 등기곡	필정보		
부동산고유번호						
성명(명칭)		일런	빈번호		н]	밀번호
		첨 부	서	면	1	
<ul> <li>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</li> <li>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</li> <li>등기신청수수료 영수</li> <li>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</li> <li>위임장</li> </ul>	인서 필확 ( 사실확(	인서 통	·주민등 ·등기 <sup>3</sup> 〈기 타	필증	본(또는	등본) 통
		년	월	일		
위 신청	인			( <u>)</u>	(전화 : (전화 :	)
(또는)위 대리역	긴			(	전화:	)
	지방병	법원			귀중	

## - 신청서 작성요령 -

- \* 1.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. 2.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.

  - 3. 담당 등기관이 판단하여 위의 첨부서면 외에 추가적인 서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

##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

7)	人	년	월	일	-1 -1	٥)	등기관 확인	각종 통지
접	宁	제		호	처리	인		

## ① 부동산의 표시

추가할 부동산

- 1.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대 300m²
- 2.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
  [도로명주소]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88길 10
 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
  1층 100m²
  2층 100m²

전에 등기한 부동산 표시

###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200 대 200m²

0

상

② 등	기원인과 그 연월일	2017년 5월 2	.5일 <b>추가</b> ·	설정계약	
3 등	등 기 의 목 적	근저당권설정			
4) ž	배권최고액	금30,000,000원			
(5) ×	내 무 자	이대백 서울특별	시 서초구 사	초대로88	길 20(서초동)
6 ব	선에등기한근저당권	2017년 4월 3일 등기한 근저당권		호로 순위	제1번으로
구분	성 명 (상호·명칭)	주민등록번호 (등기용등록번호)	주	소 (소	채 지)
<b>⑦</b> 등기의무자	이 대 백	700101-1234567	서울특별시 20(서초동)	서초구	서초대로88길
<b>®</b> 등 기 권 리 자	김 갑 동	801231-1234567	서울특별시	중구 다동	·길 96(다동)



9 등 록 면 허 서	1)	금	<b>12,000</b> 원		
9 지 방 교 육 서	1)	금	<b>2,400</b> 원		
① 세 액 합 <i>7</i>		금	<b>14,400</b> 원		
		급	<b>30,000</b> 원		
⑪ 등기신청수수효	로 납부번호	<b>5</b> : 12-12-1234	5678-0		
	일괄납부	부: 건	원		
	② 등기의무지	-의 등기필정보			
부동산고유번호		1102-2006-0	02095		
성명(명칭)	일련	l번호	비밀번호		
이대백	A77C-L0	O71-35J5	40-4636		
부동산고유번호		1101-2016-0	01234		
성명(명칭)	일련	]번호	비밀번호		
이대백	QWER-A	S12-ZXC1	40-2345		
	① 참 부	브 서 면			
•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	<b>1</b> 통	•주민등록표초	본(또는 등본) <b>1</b>	통	
•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	]서 <b>1</b> 통	· 등기필증		통	
· 등기신청수수료 영수	필확인서 1통	〈기 타〉			
•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시	나실확인서 또는				
전자본인서명확인서 빌	급증 <b>1</b> 통				
· 위임장	<u> </u>				
· 刊 日 78	0				
	2017년	5월 26일			
◑ 위 신청인	이대		화 : 010-1234-5678)		
(또는)위 대리역	<b>김 갑</b> 인	동 ⑩ (전화	화 : <b>010-5678-1234</b> ) (전화: )		

## - 신청서 작성요령 -

**등기국** 귀중

- \* 1.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.
  - 2.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.

서울중앙 지방법원

삭1행

3. 담당 등기관이 판단하여 위의 첨부서면 외에 추가적인 서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삭1행



## 등기신청안내서 -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

#### ■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란

일부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하는 등기신청입니다.

#### ■ 등기신청방법

#### ① 공동신청

근저당권설정자 즉 소유자(등기의무자)와 근저당권자(등기권리자)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.

#### ② 단독신청

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#### ③ 대리인에 의한 신청

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.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,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(業)으로 할 수 없습니다.

#### ■ 등기신청서 기재요령

※ 신청서는 한국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. 부동산의 표시산이나 신청인산 등이 부족항 경우에는 벽지를 사용하고, 벽지를 포함한 신청서의 각 장 사이에는 간인(신청 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격되는 서명)을 하여야 합니다.

#### ① 부동산의 표시란

추가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부동산을 기재하되, 등기기록상 부동산 표시와 일치하여 야 합니다. 토지(임야)는 소재, 지번, 지목, 면적 순으로 기재하고, 건물은 소재, 지번, 도로명주소(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), 구조, 종류, 면적 순으로 기재합니다.

전에 등기한 부동산도 함께 기재합니다.

####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



등기원인은 "추가설정계약" 으로, 연월일은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일을 기재합니다.

#### ③ 등기의 목적란

"근저당권설정" 이라고 기재합니다.

#### ④ 채권최고액란

아라비아 숫자로 "금○○○원" 으로 기재합니다.

#### ⑤ 채무자란

채무자의 성명(명칭)과 주소를 기재합니다.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채무자의 표시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.

#### ⑥ 전에 등기한 근저당권란

전에 등기한 근저당권을 기재합니다.

(예: 2008년 4월7일 접수 제 135호로 등기한 순위 1번 근저당권)

#### ⑦ 둥기의무자란

소유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를 기재하되, 등기기록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. 그러나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(명칭), 본점(주사무소 소재지), 등기용 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,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(명칭), 본점(주사무소 소재지),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(관리인)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.

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와 현재의 주소와 다른 경우, 등기명의인표시변경(또는 경정)등기를 신청하여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변경한 후 설정등기를 하여야 합니다.

#### ⑧ 등기권리자란

근저당권자를 기재하는 란으로, 그 기재방법은 등기의무자란과 같습니다.

#### ⑨ 등록면허세·지방교육세란

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기재합니다.

#### ⑩ 세액합계란

등록면허세액과 지방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.

#### ① 등기신청수수료란

- ② 부동산 1개당 15,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액을 기재하며, 등기신청수수료를 은행 현금납부, 전자납부, 무인발급기 납부 등의 방법에 따라 납부한 후 등기신 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납부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.
- ☞ 여러 건의 등기신청에 대하여 수납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일괄납부하는 경우 첫



번째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해당 등기신청수수료, 납부번호와 일괄납부 건수 및 일괄납부액을 기재하며, 나머지 신청서에는 해당 등기신청수수료와 전 사건에 일괄 납부한 취지를 기재합니다(일괄납부는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만 가능함).

#### ⑫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란

- ⑦ 추가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를 완료하고 '등기필정보 및 등 기완료통지서(정중앙에 보안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음)'를 교부받은 경우, 그 '등기 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'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, 성명, 일련번호, 비밀번호를 각 기재하고 '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'를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. 또한 이미 사용했던 비밀번호는 재사용을 못함을 유의(다만, 50개의 비밀번호를 모두 사용한 경우 사용했던 비밀번호를 재사용이 가능)하시기 바랍니다.
- ④ 추가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를 완료하고 '등기필증(접수인 과 등기필인 날인되어 있음)'을 교부받은 경우, 그 '등기필증'을 제출하여야 하며, 이 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.
- © 교부받은 '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'나 '등기필증'을 멸실하여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의하여 확인서면 등을 첨부한 경우, 이 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.

#### (13) 첨부서면라

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.

#### (4) 신청인등란

- ⑦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, 각자의 인장을 날인하되, 등기의무자는 그의 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한 서명(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경우에도 서명)을 합니다. 그러나 신청인이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(명칭)와 대표자(관리인)의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,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그 대표자의 인감,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(관리인)의 개인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한 서명(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경우에도 서명)을 합니다.
- ①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, 주소,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.

#### ■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

#### < 신청인 >



#### ① 위임장

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.

#### ②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

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합니다.

#### ③ 등기필증

추가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의무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등기의무자가 소유권 취득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첨부합니다. 단, 소유권 취득의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등기필정보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, 성명, 일련번호, 비밀번호를 각 기재(등기필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한번 사용한 비밀번호는 재사용을 못함)함으로써 등기필증 첨부에 갈음합니다.

다만, 등기필증(등기필정보)을 멸실하여 첨부(기재)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 기법 제51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 다.

#### < 시·구·군청, 읍·면 사무소, 동 주민센터 >

#### 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

시장, 구청장,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면허세납부서(OCR용지)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 기소의 정액등록면허세납부서 작성기능을 통하여 정액등록면허세납부서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만 신청서의 등록면허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하거나, 또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하고 출력한 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를 첨부합니다.

#### ②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

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(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)를 첨부하거나,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『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.

#### ③ 주민등록표초본(또는 등본)

등기권리자인 근저당권자의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등본(각,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) 을 첨부합니다.

#### <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. 금융기관 등 >

둥기신청수수료



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(http://www.iros.go.kr/PMainJ.jsp)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(신용카드, 계좌이체, 선불형지급수단)으로 납부하고 출력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 필확인서를 첨부하거나,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수납금융기관 또는 신청수수료 납부 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발급받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를 첨부합니다.

#### < 등기과 · 소 >

#### 법인등기사항전부(일부)증명서

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(각,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)를 첨부합니다.

#### <기 타>

신청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, "대법원 종합법률정보 (http://glaw.scourt.go.kr)"의 규칙/예규/선례에서 『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, 등기예규 제1568호』 및 『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, 등기예규 제1435호』등을 참고하시고,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변호사, 법무사 등 등기와 관련된 전문가나 등기과·소의 민원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■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

신청서,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,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, 위임장, 인감증명서 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, 주민등록표초(등)본, 추가근 저당권설정계약서,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.